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2. 28.

사회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출일자 : 2011년 2월 10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1년 2월 18일

라. 상정일자 : 제159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회의(2011년 2월 24일)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 설명자 : 복지국장 김용선)

가. 제안이유

- 구립 예술단체인 영등포구립여성합창단은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각종 경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영등포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으므로, 전공자를 위촉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 좀더 높은 수준의 합창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영등포구가 문화예술의 최고에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수당, 여비 지급대상자를 지휘자, 반주자에서 단원, 객원출연자로 확대
(안 제7조제2항)
-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 정비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이현영)

- 본 조례안은 제7조제2항 예술단원의 수당 및 여비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코자 제출된 조례안 임.
- 2005년 8월 26일 창단된 영등포구립여성합창단은 그동안 각종 문화행사 출연과 경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국민의 정서생활 함양과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구립여성합창단 지휘자, 반주자에게 지원하던 수당을 단원, 객원출연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한층 수준 높은 합창단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임.
- 그 외 일부 조항의 문구를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4. 審査結課 : 原案 可決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45 호
----------	--------

제출연월일 : 2011.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구립 예술단체인 영등포구립여성합창단은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각종 경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영등포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으므로, 전공자를 위촉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 좀더 높은 수준의 합창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영등포구가 문화예술의 최고에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수당, 여비 대상자를 지휘자·반주자에서 단원으로 확대
(안 제7조 제2항)
- 나.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정비(안 제1조외 10개 조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 나. 예산조치: 2011년 세출예산 편성
- 다. 합 의: 합의사항 없음
- 라. 기 타
 - (1)입법예고(2011. 1. 13. ~ 2011. 2. 7.): 의견없음
 - (2)규제심사 결과: 규제 심사 대상 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법”을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 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예술단체” 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2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특별전형에 의하여”를 “특별전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 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같은 조 제2항 “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및 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 를 “**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단원, 객원출연자 및 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단 제7조제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p>제6조(운영위원회) ①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운영위원회는 다음 <u>각호의</u>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2. (생략)</p> <p>3. 기타 <u>구청장이</u> 부의하는 안건</p>	<p>제6조(운영위원회) ① -----</p> <p>-----</p> <p>② ----- <u>각 호의</u> -----</p> <p>-----.</p> <p>1.~2. (현행과 같음)</p> <p>3. 그 밖에 <u>구청장이</u>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제7조(경비의 지원) ①예술단체의 운영에 따른 경비는 매년도 예산의 <u>범위안에서</u> 이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u>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및 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u>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7조(경비의 지원) ① -----</p> <p>----- <u>범위에서</u> -----</p> <p>-----.</p> <p>② <u>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단원, 객원출연자 및 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u> -----</p> <p>-----.</p>